

1. 개정이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안 제7조, 안 별지 제5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해당없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종별 면허증·허가증(<u>사업 자 등록증</u>으로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 당한다)와 <u>사업자등록증</u>을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 업자등록증</u>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 ----- ----- ----- ----- ----- ----- ----- ----- ----- -----. 1. -----<u>사업 자등록증명</u>----- ----- 2. 3.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 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 다)</u>----. ---- <u>사업자등록증명</u>--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체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업종	자본금	
	사업시행 예정 연월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사업시행계획서 1부 ※ 제1호의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